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인권침해사건조사·처리및
구금·보호시설의실태조사에관한
규칙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법무부장관)
제출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인권침해 사건 조사·처리 및 구금·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「공소청법」 및 「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함에 따라,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 맞게 인권침해 사건 조사·처리 및 구금·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

3. 주요내용

‘검찰청’, ‘대검찰청’ 등 기존 검찰조직의 명칭을 공소청의 조직체계에 맞게 정비(안 제2조, 제12조)하고,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변경 및 삭제(안 제2조, 제12조, 제20조, 제24조)하여 변경되는 기관의 권한·업무 및 관련 제도를 본 규칙에 반영하려는 것임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인권침해 사건 조사·처리 및 구금·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

인권침해 사건 조사·처리 및 구금·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
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검찰청”을 “공소청”으로, “교정·보호·출입국·수사”를
“교정·보호·출입국·검사사무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 중 “검찰청”을
“공소청”으로 한다.

제12조의 제목 “(검찰 수사 관련 사건의 조사)”를 “(공소청 송치 사건 관
련 사건의 조사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검찰
수사와 관련된 검찰청”을 “공소청에 송치된 사건과 관련된 공소청”으로,
“검찰의 독립성”을 “공소청의 독립성”으로, “검찰의 자체”를 “공소청의
자체”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 중 “검찰”을 “공소청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
2호 중 “검찰에서 공정한 수사”를 “공소청에서 공정한 조사”로 하며, 같
은 조 제2항 중 “검찰 수사와”를 “공소청에 송치된 사건과”로, “대검찰청
으로 넘겨 검찰”을 “공소청으로 넘겨 공소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
중 “대검찰청”을 “공소청”으로 한다.

제20조를 삭제하고, 제21조 및 제22조를 각각 제20조 및 제21조로 한다.
제23조 앞의 “제2절 사건의 처리 및 구제”를 삭제한다.

제22조 앞에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절 사건의 처리 및 구제

제23조부터 제25조까지를 각각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로 한다.

제23조(종전의 제24조) 제1항제1호 중 “검찰”을 “수사기관”으로 한다.

제26조 앞의 “제3절 사건에 대한 분석”을 삭제한다.

제25조 앞에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절 사건에 대한 분석

제26조 및 제27조를 각각 제25조 및 제26조로 한다.

제28조 앞의 “제3장 구금·보호시설 실태조사”를 삭제한다.

제27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장 구금·보호시설 실태조사

제28조부터 제30조까지를 각각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로 한다.

제31조 앞의 “제4장 보칙”을 삭제한다.

제30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장 보칙

제31조 및 제32조를 각각 제30조 및 제31조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(정의)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제2조(정의) ----- -----.
1. “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”란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 및 <u>검찰청</u> 소속 공무원의 업무수행과정(<u>교정·보호·출입국·수사</u> 등을 말한다)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행위를 말한다.	1. ----- ----- <u>공소청</u> <u>소청</u> ----- --- <u>교정·보호·출입국·검</u> <u>사사무</u> ----- -----.
2. 3. (생략)	2. 3. (현행과 같음)
4. “피진정인”이란 피해자에게 인권침해 행위를 하였다고 진정인에 의하여 특정된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 및 <u>검찰청</u>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.	4. ----- ----- ----- ----- <u>공소청</u> -- -----.
5. (생략)	5. (현행과 같음)
제12조(<u>검찰 수사 관련 사건의 조사</u>) ① <u>검찰 수사와 관련된 검찰청</u> 소속 공무원의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는 <u>검찰의 독립성과 자율성</u> 을 고려하여 <u>검찰의 자체</u> 조사 후 필요한 경우에만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조사를 진행	제12조(<u>공소청 송치 사건 관련 사건의 조사</u>) ① <u>공소청에 송치된 사건과 관련된 공소청</u> ----- ----- --- <u>공소청의 독립성</u> ----- ----- <u>공소청의 자체</u> ----- -----.

할 수 있다.

1. 검찰에서 자체 조사를 진행
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

2. 언론 등 사회적 관심이 집중
되고 사안이 중요한 인권침해
사건으로서 검찰에서 공정한
수사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
으로 판단하여 법무부장관이
조사를 명한 경우

② 검찰 수사와 관련된 진정은
제1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대
검찰청으로 넘겨 검찰에서 자체
조사하여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
로 한다.

③ 대검찰청은 제2항에 따라 넘
겨받은 사건을 진정사건으로 접
수한 후 자체 조사하여 처리하
되, 그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
보고하여야 한다.

④ (생략)

제20조(수사 개시로 인한 조사 중
단)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
같은 내용에 대하여 검찰의 수
사가 시작된 경우에는 사건 조
사를 즉시 중단하고 사건을 대
검찰청으로 넘겨야 한다. 다만,

-----.

1. 공소청-----

2. -----

----- 공소청에서 공정한
조사-----

② 공소청에 송치된 사건과 --
----- 공
소청으로 넘겨 공소청-----

③ 공소청-----

④ (현행과 같음)

<삭 제>

확인된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
사실에 대한 구제절차 이행은
계속할 수 있다.

제21조 · 제22조 (생략)

제2절 사건의 처리 및 구제

<신설>

제23조 (생략)

제24조(인용 및 구제조치) ① 법무장관은 사건의 조사 결과
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실이
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
의 조치를 하거나 진정 내용과
관계되는 기관의 장에게 조치를
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

1. 조사 결과 인권침해 행위의
내용이 범죄행위에 해당하고
이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필요
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찰
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
한다.

2. ~ 5. (생략)

② ~ ⑥ (생략)

제25조 (생략)

제3절 사건에 대한 분석

<신설>

제20조 · 제21조 (현행 제21조 및
제22조와 같음)

<삭제>

제2절 사건의 처리 및 구제

제22조 (현행 제23조와 같음)

제23조(인용 및 구제조치) ① ---

-----.

1. -----

----- 수사
사기관-----
--.

2. ~ 5. (현행과 같음)

② ~ ⑥ (현행과 같음)

제24조 (현행 제25조와 같음)

<삭제>

제3절 사건에 대한 분석

<u>제26조</u> · <u>제27조</u> (생략) <u>제3장 구금 · 보호시설 실태조사</u> <u><신설></u> <u>제28조</u> ~ <u>제30조</u> (생략) <u>제4장 보칙</u> <u><신설></u> <u>제31조</u> · <u>제32조</u> (생략)	<u>제25조</u> · <u>제26조</u> (현행 제26조 및 제27조와 같음) <u><삭제></u> <u>제3장 구금 · 보호시설 실태조사</u> <u>제27조</u> ~ <u>제29조</u> (현행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와 같음) <u><삭제></u> <u>제4장 보칙</u> <u>제30조</u> · <u>제31조</u> (현행 제31조 및 제32조와 같음)
---	---